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의 요건 중 “전속성” 제외 〉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607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중 “전속성” 제외	3

I. 제안경위

2025년 4월 7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이른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업장을 오가며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산재보험법은 2023년 7월 개정을 통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면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여전히 전속성 기준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일부 노동자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무를 제공하

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적 한계이며,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시대착오적인 기준입니다.

이에, 제77조 중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노무 제공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77조).

Ⅲ. 검토의견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중 “전속성” 제외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법의 ‘주로 하나의 사업에’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전속성이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7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	① ----- ----- ----- ----- ----- ----- ----- ----- ----- -----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주로 하나의 사업에</u>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u>노무를</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①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②보험 모집, 건설기계 운전, 골프장 캐디 등의 직종에 종사하면서, ③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④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전속성) 요건을 갖춘 사람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규정하고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따라서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하나의 사업’이 아닌 복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함될 수 없어 현행법이 이들을 보호하는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음.¹⁾

개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와 같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제외하여 산업재해로부터 좀 더 폭넓게 노무를 제공하는 자들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단순히 적용 대상만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자가 다수가 됨에 따라 이들 간 의무의 범위 및 비중이나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²⁾ 등에 있어 그 기준 등이 모호하여 법률 시행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①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 등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한 규제법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책

1) 법률 제18928호(2022. 6. 10.,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2) 제175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임을 지는 사람을 명확히 특정하기 위해서는 ‘전속성’이 필요하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가에서 보험급여 등의 혜택을 주는 사회보장법으로, 법적 성격, 입법목적 등이 다른 산업안전보건법의 법 적용 범위와 단순 비교는 어려우며, ③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근로자적 특징 중 하나로 전속성을 제시한 점을³⁾ 고려한다면 개정안과 같이 전속성을 폐지하여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의 직종을 확대하여 보호범위를 넓히고, 각 직종별 업무 특성 및 유해·위험요소 등에 따른 구체적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보호 방안이라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5

3) 현재 2015헌바413 결정(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 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참조